

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2 및 제12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 2(청문) 영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발생하게 된다.

제12조의 3(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, 확인한 후 「별지 제1호 서식」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[별지 제2호 서식]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[별지 제3호 서식]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.

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.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[별지 제4호 서식]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[별지 제5호 서식]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[별지 제6호 서식]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[별지 제7호 서식]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,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[별지 제8호 서식]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“수수료 등”을 “수수료”로 하고, 동조 본문 내용 중 “수수료 및 과태료 등”을 “수수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(안)
(신	설)	제12조의2(청문)	영 제42조 제2항	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3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.
(신	설)	제12조의3(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)	① 구청장	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 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, 확인한 후 [별지 제1호서식]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[별지 제2호서식]의 과태료납 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 에서 [별지 제3호서식]의 과태료 처분 및 납 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.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이 기간내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[별지 제4호서식]에 의하여 발부하 여야 한다.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 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[별지 제5호서 식]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제13조(수수료 등 징수절차) <u>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절차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u>	④ <u>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[별지 제6호서식]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u> ⑤ <u>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[별지 제7호서식]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u> ⑥ <u>구청장은 과태료 부과,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[별지 제8호서식]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.</u> ⑦ <u>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</u> 제제13조(수수료 징수절차) <u>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절차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u>

[별지 제1호 서식]

제 호

수 신

제 목 과태료 처분 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.

년 월 일

사 하 구 청 장 (인)

[별지 제2호 서식]

과태료 납부통지서
(개인통지용)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	
납 부	성명	
의무자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		
사 하 구 청 장 (인)		

과태료 납부서
(수납은행 보관용)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	
납 부	성명	
의무자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은행 :		
수납인	(인)	

영수필 통지서
(구 통보용)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	
납 부	성명	
의무자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은행 :		
수납인	사하구청장귀하	

영 수 증
(개인통지용)

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	
납 부	성명	
의무자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수납은행 :		
수납인		취급자인

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

(갑)

(처분기관 보관용)

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

발행번호	제	호	회계년도	세입과목
위반행위자	성명		주소	
과태료금액		원	납부기간	까지 납부장소
위반사실	일시		내용	
위반법률	폐기물관리법	제	조	발부일자
				의견진술기간
위반행위자 서명		주민등록번호		단속공무원 확인
				까지

특기사항

(을)

(피처분자 통지용)

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

발행번호	제	호	회계년도	세입과목	
위반행위자	성명		주소		
과태료금액		원	납부기간	까지	납부장소
위반사실	일시		내용		
위반법률	폐기물관리법	제	조	발부일자	의견진술기간
					까지
위반행위자 서명		주민등록번호		단속공무원 확인	

1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2. 위반 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 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.
3.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사 하 구 청 장 (인)

168mm×118mm(인쇄용지[특급] 34g/m²)

※표중 발행번호, 회계년도, 세입과목, 위반행위자, 과태료금액, 납부기간,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

(병)

(수납은행 보관용)

과 태 료 납 부 서

발 행 번 호	제	호	회 계 년 도		세 입 과 목	
납 부 의 무 자	성 명		주 소			
과 태 료 금 액		원	납 부 기 간	까지	납 부 장 소	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은행 :

수 납 인

취 급 자 인

168mm×118mm(인쇄용지[특급] 34g/m²)

※표중 발행번호, 회계년도, 세입과목, 납부의무자, 과태료금액, 납부기간,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

(정)

(개인 통지용)

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

발 행 번 호	제	호	회 계 년 도		세 입 과 목	
납 부 의 무 자	성 명		주 소			
과 태 료 금 액		원	납 부 기 간	까지	납 부 장 소	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은행 :

수 납 인

취 급 자 인

168mm×118mm(인쇄용지[특급] 34g/m²)

※표준 발행번호, 회계년도, 세입과목, 납부의무자, 과태료금액, 납부기간,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

(무)

(구 통보용)

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

발 행 번 호	제	호	회 계 년 도		세 입 과 목	
납 부 의 무 자	성 명		주 소			
과 태 료 금 액		원	납 부 기 간	까지	납 부 장 소	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
년 월 일

수납은행 :

수 납 인

사 하 구 청 장 귀 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제 호 과태료납부 독촉장

납 부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
의 무 자	③ 주 소			
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				
⑤ 위 반 사 항				
⑥ 과 태 료 금 액			⑦ 당초 납부기일	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
바랍니다.

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사 하 구 청 장 (인)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)

[별지 제5호 서식]

제 호

과태료 부과취소(변경) 통지서

주 소 :

성 명 : 귀하

① 고 지 금 액	② 취 소 (변 경) 액	③ 차 액	비 고

취소(변경) 사유 :

년 월 일

사 하 구 청 장 (인)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)

[별지 제6호 서식]

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

신 청 인	① 성 명	(한자)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		
과 태 료 처 분 내 역	④ 부 과 기 간		⑤ 납부통지서번호	
	⑥ 고지받은일자		⑦ 과태료 금액	
	⑧ 과태료 처분사유			
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			

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
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
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사 하 구 청 장 귀하

[별지 제7호 서식]

제 호

수 신

발신: 사하구청장(인)

제 목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1. 제 조와 관련입니다.

2.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

이의제의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 처분에	① 성 명	(한자)	② 주민등록번호	
대한 이의제기자	③ 주 소			
과 태 료	④ 고지일자		⑤ 과태료 금액	
처 분 내 역	⑥ 부과기간		⑦ 이의제기 일자	

첨부 1.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

2.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)

[별지 제8호 서식]

과 태 료 수 납 부

① 일련번호	② 통지서번호	③ 과 태 료 처분통지일	④ 독 축 장 발 부 일	납 부 기 한		⑦ 금 액	납 부 의 무 자		⑩ 과 태 료 납 부 일	이 의 제 기	
				⑤ 당 초	⑥ 독 축		⑧ 성 명	⑨ 주 소		⑪이의제기일	⑫법원통보일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)